

수원고등법원 2023. 1. 12 선고 2022나11254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수원고등법원 2023. 1. 12 선고 2022나11254 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 12. 23 선고 2021가합401782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태헌

변론종결 2022. 11. 10.

판결선고 2023. 1. 12.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 12. 23. 선고 2021가합401782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중 1/4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B 사이에 2018. 3. 22.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피고는 B에게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 2018. 3. 22. 접수 제1608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당사자들의 주장과 제출된 증거를 더하여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다(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 5쪽 12행 “망의 명의로”를 “망인 명의로”로 고친다.
- 5쪽 아래에서 3행 “요양비 합계 9,380,360원을 본인이 부담하는 등”을 “요양비 합계 9,380,360원의 상당부분을 본인이 부담하는 등”으로 고친다.
- 6쪽 15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이 이 사건 재산분할협의 시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의 기여분으로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정도를 초과하여 이루어진 부분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사정에 더하여, 민법은 기여분에 관하여 공동상속인들의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제1008조의2) 법원이 재량을 가지고 형성적으로 이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 점, 기여분 협의는 재산적 고려뿐만 아니라 부양관계, 가족 내부의 정서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므로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협의가 성립한 이상 그 의사를 존중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기여분 협의가 지나치게 과다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태호, 판사 장지용, 판사 이봉락

별지